

##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「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2023. 5. 19.

### 강 원 도 지 사

#### I. 변경 개요

□ **자금규모: 3,530억 원 (30억 원 증액)**

- 경영안정자금: 2,550억 원 (금융기관 협조자금)
  -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: 700억 원 (금융기관 협조자금)
  - 특수목적자금: 280억 원 (도 중소기업육성기금) \* 증액: 30억 원
- ※ 증액분 30억 원은 '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'에 배정

□ **주요 변경 사항**

- (특수목적자금) 30억 원 증액하여 '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'에 배정
  - '특별재난지역'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
  - 수요 저조 등,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
- (특수목적자금) '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'의 신청 대상 확대
  - 기업 요건을 '종사자 수 20명 이상', '매출액 100억 원 미만'으로 완화
  - 현행법상 육아 제도인 '육아휴직'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, '출산전후휴가', '배우자 출산휴가'를 활용한 기업에까지 신청 자격을 추가로 부여
- (경영안정자금-특수목적자금) 우대기업에 '강원 지역혁신 선도기업'을 추가
  - (경영안정자금) 2.0 → 2.5% 이차지원, 운전자금 5 → 7억 원 한도
  - (특수목적자금) 시설자금 시 8 → 20억 원 한도

## II. 지원 계획

### □ 지원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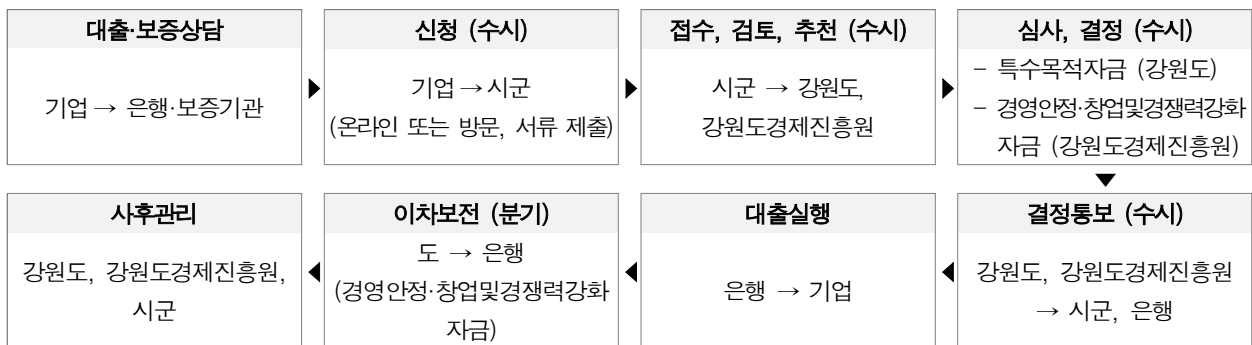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: '23. 5. 19.(금) ~ 12. 15.(금) ※ 자금소진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
- 신청자격: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지원내용

자금명	지원업종	용자 재원	지원 내용	지원조건			
				대출한도	기간	지원수준	기업부담
경영안정자금 (2,550억 원)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 (건설업 등), 그 밖의 업종 II(도·소매업 등), 그 밖의 업종 III(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)	은행 자금	이차 보전	운전자금 5억 원 (우대 시 최대 16억 원)	4년	이차보전 2.0% (우대 시 2.5% 또는 3.0%)	대출금리 - 이차보전
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(700억 원)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 (건설업 등)			시설자금 15억 원	9년	이차보전 2.0%	
특수목적자금 (280억 원) (중 30억 원)	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조업 등), 지식정보업(정보통신업 등), 그 밖의 업종 I (건설업 등)	기금	직접 용자	운전·시설자금 8억 원 (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)	5년	고정금리 1.5%	1.5%

※ '특수목적자금' 증액분 30억 원은 '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'에 배정

### ○ 지원절차

※ 용자관리시스템: (기업용) [hext.gwep.or.kr](http://hext.gwep.or.kr), (금융기관용) [harus.gwep.or.kr](http://harus.gwep.or.kr)



### ○ 용자한도

-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용자한도: 3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  - 용자를 미실행하였다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용자추천결정서의 결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
  - ※ 과거 특별지원자금(코로나19, 산불,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등)은 한도 합산 시 제외
- (경영안정자금) 운전 5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 -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→ 매출액 기준 미적용
  - ※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시 유효기간 1년 적용 →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

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시설 15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  - 단, 이미 지출된 금액(계약금 등)은 불인정
  - 개인 간 거래 시, 특수관계인(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 제한
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8억 원 한도
  - 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,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, 2억 원 한도

## ○ 지원 제외대상

- 납세 의무 이행 여부, 기업경영 상황 관련
  - 세금(국세,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  - 휴·폐업 중인 기업(단,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)
  -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(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)
-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,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
  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·투기 조장업
  -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  -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 -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자금 허위·부정 신청, 용도 외 사용, 대출 미실행 관련
  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→ 용자추천 영구 제한
  -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(임대수입, 용도전환, 후속계획 미이행 등) 기업 → 해당 자금을 대하여 향후 3년간 용자추천 제한
  - 용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(단,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) → 해당 자금을 대하여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용자추천 제한
-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, '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' 관련
  - 최근 5년간 정책자금(정부, 지자체)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
  - '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'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,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(운전자금 신청 시)
-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, 최근 5년간 총 용자한도 관련
  - 신청일 기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
  -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용자한도 3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 초과 기업
  - ※ 과거 특별지원자금(코로나19, 산불, 우크라이나-러시아 사태 등)은 한도 합산 시 제외

## ○ 기타사항

### - 용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·승인신청

- 신청방법: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,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
- 접수처: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
- 신고대상: 대표자·기업형태의 변경(상속에 따른 승계), 상호·소재지의 변경, 휴·폐업,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
- 승인대상: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, 법인 전환, 주생산업종의 변경, 계약 대상·시설의 변경, 용자의 추천기한·취급은행의 변경, 자금의 종류·용도의 변경, 담보 종류의 변경

※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·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

※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% 이내만 가능

### - 상환유예

- 신청대상: '23. 1~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
  - ※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
- 신청기한: '23. 6. 30일까지
  - ※ 경영안정자금: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
  - ※ 창업및경쟁력강화·특수목적자금: 분기 말 1개월 전까지
- 신청방법: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(→ 시군 기업지원부서)
- 신청사유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
  - 1)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(자연재해, 화재, 코로나19에 한함)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  - 2)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
  - 3)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
  - ※ (공통) 피해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20% 이상 → '19~'22년 등 대비 종합 비교·판단
- 자금별 상환유예 내용

자금명	상환유예 내용	비고
경영안정자금	만기 연장 6개월	-
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	거치기간 연장 또는 원금상환 유예 6개월	만기 연장 불가
특수목적자금	거치기간 연장 또는 원금상환 유예 6개월	만기 연장 불가

※ 상환유예를 1년 이상 사용한 기업은 추가 상환유예 불가

## ○ 사후관리 협조사항

- (기업) 자금 사용 완료 시, 1개월 내 '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'(서식8) 제출 → 시군
  - (시군) 보고서를 확인한 후(현지 확인 등), 용자관리시스템에 등재
- (기업)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,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
  - 용도 외 자금 사용 등 적발 시, 이차보전 중단, 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

〈 주요 사후관리 대상 〉

-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(기업의 휴·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)
-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(접경지역 입주기업의 도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등)
-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《 육성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》
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
-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,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, 용자 승인내용·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기업이 휴·폐업하였거나,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
-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용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·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(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)
-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용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(운전자금 ↔ 시설자금)
- 대표자,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·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
- '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'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

○ 지원문의: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

기관	연락처	기관	연락처
춘천시 (기업지원과)	(033)250-3088 ※ 6.9.까지 (033)250-4910	영월군 (경제고용과)	(033)370-2499
원주시 (기업지원일자리과)	(033)737-2975	평창군 (경제과)	(033)330-2763
강릉시 (기업지원과)	(033)640-5848	정선군 (전략산업과)	(033)560-2969
동해시 (산업정책과)	(033)530-2174	철원군 (경제진흥과)	(033)450-5356
태백시 (경제과)	(033)550-2414	화천군 (지역경제과)	(033)440-2356
속초시 (지역경제과)	(033)639-2352	양구군 (경제체육과)	(033)480-7115
삼척시 (경제과)	(033)570-3363	인제군 (경제협력과)	(033)460-4412
홍천군 (경제진흥과)	(033)430-2813	고성군 (투자유치과)	(033)680-3736
횡성군 (경제정책과)	(033)340-2043	양양군 (경제에너지과)	(033)670-2690

※ 강원도 기업지원과: (033)249-2757 | 강원도경제진흥원: (033)749-3305

### III.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

#### 1 경영안정자금

○ 지원내용: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

- 자금규모: 2,550억 원
- 지원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 I·II·III \* 참고
- 용자한도: 운전자금 5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 - 단,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→ 매출액 기준 미적용

기업 유형	이자보전을	용자한도(이하)	용자기간
○ 일반기업	2.0%	5억 원	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% 범위 내  (단,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)
○ 도내 이전기업(3년 이내), 벤처기업 ○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○ Inno-biz, Main-biz 선정기업 ○ (예비)사회적, 마을기업(도지사 선정)	2.0%	6억 원	
○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장관 선정) ○ 마을기업(행정안전부장관 선정) ○ 가족친화기업(여성가족부장관 선정)	2.0%	7억 원	
○ 강원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스타기업 ○ 강원바이오유망기업(도지사 선정)	2.5%	5억 원	
○ 향토기업(도내 20년 이상 기업) ○ 여성기업(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) ○ 장애인기업(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) ○ 일자리 대상기업(도지사 선정) ○ 사회적경제 선도기업(도지사 선정) ○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(도지사 선정)	2.5%	7억 원	
○ 유망중소기업(도지사 선정) ○ 백년기업(도지사 선정)	3.0%	8억 원	
○ 접경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○ 입주기업	3.0%	16억 원	

※ 대출금리: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

※ 강원 '중소기업대상' 수상 기업 이차보전을 추가 우대(수상일로부터 2년)

- 내 용: 대상 1.0%p, 우수상 0.7%p, 장려·특별상 0.5%p만큼 추가로 이차보전

- 용자취급기관(13): 도내 12개 금융기관,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SC제일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, 신한중앙회, MG새마을금고, 지역 농·축협,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

- 유효기간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연장 불가)

- 신청서류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\* 참고

## ②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

○ 지원내용: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

- 자금규모: 700억 원
- 지원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 I \* 참고
- 용도제한
  - 부지매입비(개별입지)는 건축허가(건축신고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
  - 부지매입비(계획입지)는 산업(농공)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
  - 건물(공장)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
  - 단순 사무실, 일반창고,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
- 용자한도: 시설자금 15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
기업 유형	이차보전을	용자한도(이하)		용자기간
◦ 일반기업	2.0%	시설자금 15억 원	소요액(공급가)의 75%	9년 (4년 거치 5년 균등상환)

※ 대출금리: 분기별 변동금리(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)

※ 지식산업센터 입주(예정)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(사무실 형태)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% 한도 내에서 지원함.

※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,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. 단,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.

- 용자취급 금융기관(8): 전국 제1 금융기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

- 유효기간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1회 6개월 연장 가능)
- 신청서류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\* 참고

### 3 특수목적자금

○ 지원내용: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·시설자금

- 자금규모: 280억 원 (30억 원 증액, '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'에 배정)
- 지원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 I \* 참고

기업 유형	지원 조건
① 수출지원자금	총 매출액 대비 수출 매출액이 10% 이상, 또는 수출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기업
② 창업초기지원자금	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※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'창업기업 확인서' 제출
③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(신규 30억 원 배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순위: (특별) '특별재난지역'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</li> <li>• 2순위: (일반) 자연재해 및 FTA, 고환율, 원자재난,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(시장·군수 추천기업)</li> </ul> * 원자재난: 최근 2년 내 30%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% 이상을 취급한 기업 * 물류피해: 재무제표의 '손익계산서'상 '판매비및관리비' 항목 중에 '운반비'와 '차량유지비'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%p 이상 증가한 기업 ※ 수요 저조 등, 필요시 타 항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할 수 있음.
④ 고용창출지원자금	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(수상일로부터 2년)
⑤ 산업단지지원자금	산업단지·농공단지 입주 예정, 또는 입주 초기(1년 이내) 기업
⑥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	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'에 참여한 기업 ※ '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' 수혜기업은 제외
⑦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('23년 시범운영)	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(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) * 종사자 수 2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,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'육아휴직',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, '출산전후휴가', '배우자 출산휴가'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(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) * 종사자 수, 매출액 기준 미적용

- 용자한도: 운전·시설자금 8억 원 한도

- 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,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, 2억 원 한도

기업 유형	금리	용자한도(이하)		용자기간
①~⑥	1.5% 고정금리	운전·시설자금 8억 원		5년 (2년 거치 3년 균등상환)
⑦	1.5% 고정금리	운전자금 1~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0~ 10억 원 미만: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~ 30억 원 미만: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~100억 원 미만: 3억 원	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2억 원을 넘을 수 없음	1년 일시상환 * 재신청 시 유예기간 1년 적용

- ※ (⑦)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)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1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, 그리고 대출기간 1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(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근무신청서, 명령서,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) →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,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.
- ※ (⑦)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) 현행법상 ‘육아휴직’,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’, ‘출산전후 휴가’, ‘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(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(→근로자)와 지원금(→사업주)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※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재신청 시 유예기간 1년 적용 →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
- ※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(신청자금의 70%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)

창업초기(10억 원), 유망중소기업(20억 원), 백년기업(30억 원), 접경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입주기업(10억 원),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·강원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유망기업(20억 원)

- 용자취급 금융기관(8): 도내 제1 금융기관

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

- 유효기간: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)

- 신청서류: 공통서류(신청서 등), 업종별 서류, 자금별 서류 \* 참고

## 참고

##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

### ■ 지원대상(공통): 경영안정자금 ·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· 특수목적자금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 빙 자 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○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(상시고용 5인 이상\*) \* 단,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 상시고용 미적용

C. 제조업	10~34	제조업	등록증
D. 전기,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	35114	태양력 발전업 (발전 용량 1,000kW 이상)	허가증
E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	37 381 3821 3822 3823 383 39	하수,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,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,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	허가증
H. 운수 및 창고업	491 492 493 501 502 521 52913 5294 5299	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 도로화물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N. 사업시설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	74 76390	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	등록/허가증
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51 95211	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	등록/허가증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 빙 자 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○ 지식정보업 (상시고용 5인 이상\*) \* 단,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 상시고용 미적용

J. 정보통신업	581	서적,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등록/허가증
	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5911	영화,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	
	5912	영화,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	
	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
	612	전기통신업	
	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
	631	자료처리,호스팅,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	
	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	
M. 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	등록/허가증
	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
	713	광고업	
	714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
	71531	경영컨설팅업	
	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	
	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
	732	전문 디자인업	

○ 그 밖의 업종 I(상시고용 5인 이상)

F.건설업	41	종합건설업	등록증
	42	전문직별 공사업	
I. 숙박 및 음식점업 中 관광숙박업	55101	호텔업	
	55103	휴양콘도 운영업	

※ ‘상시고용 인원’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평균 그 이상을 유지했어야 하고,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.  
(단,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않음).

## ■ 지원대상(개별): 경영안정자금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증빙자료
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

### ○ 그 밖의 업종 Ⅱ(상시고용 5인 이상)

여행업	75210	여행사업	등록증 (관광진흥법)
유원시설업	91210	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	
관광편의시설업	5611	관광식당업	
	73301	관광사진업	
	55104	관광펜션업(민박업)	
	55104	한옥체험업(민박업)	
	47130	면세점업	
	75290	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	
	75210	관광여행알선	
관광사업 기타		종합휴양업,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	
G.도매 및 소매업	45~47	도매 및 소매업	등록/허가증
I. 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 및 음식점업 (단, 55101, 55103 → 그 밖의 업종 I)	

### ○ 그 밖의 업종 Ⅲ(상시고용 10인 이상)

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01	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	902	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	
	91111	실내경기장 운영업	
	91112	실외 경기장 운영업	
	91131	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	
	91132	체력 단련시설 운영업	
	91292	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	
	91293	기원 운영업	
	912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	

※ '상시고용 인원'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평균 그 이상을 유지했어야 하고,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.  
(단,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아니함).

■ 지원제외(공통):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중

구분	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	대 상 업 종
제조업	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	"불건전"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	"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"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	담배 중개업
	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	46333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	"불건전"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	갬블링 및 배팅업

## ■ 신청 구비서류

### 구비서류

<b>공 통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금지원 신청서 【서식1】 ※ (필수) '중소기업 확인서' 제출</li> <li>2. 사업계획서 【서식2】 ※ (필수)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은 '창업기업 확인서' 제출</li> <li>3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【서식3】</li> <li>4. 자금상담 확인서 【서식4】</li> <li>5.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공장등록증, 건축허가증)</li> <li>6.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(홈텍스 출력물, 세무·회계사 확인분)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, 기타 매출전업률(30% 이상)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, 추정재무제표(세무·회계사 확인분) 제출</li> <li>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</li> <li>8.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(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필수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)</li> <li>- (필요시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</li> <li>- (필요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li> <li>- (필요시) 법인등기부등본(현재 유효사항)</li> <li>- (필요시) 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/li> <li>9.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【서식9】 - 시설자금에 한함</li> <li>10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-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)</li> <li>11.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(회수) 동의서 【서식10】</li> </ol>
------------	--

### 업종별 구비서류

<b>제조업</b>	<택 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장등록증명원 1부</li> </ul>	제조시설면적 500㎡ 이상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관리대장 1부 (용도 : 공장, 제조업소 / 소유주 표기)</li> <li>○ 임대차계약서 1부 (임차공장일 경우)</li> <li>○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외주 가공사)</li> </ul>	제조시설면적 500㎡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
<b>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</li> </ul>	
<b>건설업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, 정보통신공사업법,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</li> </ul>	
<b>관광숙박업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※ 업종: 관광숙박업 표기</li> <li>○ 시설자금의 경우,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	
<b>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여가서비스업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</li> </ul>	
<b>무역업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(해당시) 1부</li> <li>○ 수출실적증명 (한국무역협회 등 발급) 1부</li> <li>○ 수출계약서 1부 (수출초보기업 해당시)</li> <li>- 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,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/O, 해외유통망 P/O * 외국환은행·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</li> </ul>	

## 자금별 구비서류

<b>공통</b>	○ 자금별 소요액 확인·산정에 필요한 서류		
<b>경영 안정 자금</b>	<b>일반기업</b>	○ 공통서류, 업종별 구비서류	
	<b>우 대 기 업</b>	여성기업	○ 여성기업확인서 1부
		장애인기업	○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
		접경지역 입주	○ 사업자등록증 '소재지'로 확인
		향토기업 (업력20년이상)	○ 법인: 등기부등본(구/현) ○ 개인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사실증명(소재지 기준)
		북평공단 입주	○ 관리청의 입주계약서 1부
		폐광지역 입주	○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
		기타 우대기업 인증	○ 인증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
<b>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</b>	<b>공통</b>	○ 공통서류, 업종별 구비서류	
	부지 매입	○ 매매(분양) 계약서,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, 임대차현황확인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	
	건물 매입	○ 매매계약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, 임대차현황확인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	
	공장 경매 매입	○ 경매낙찰서류 사본, 감정평가서, 대금지급기한통지서	
	공장 건축	○ 건축허가(신고)서, 도급계약서, 원가계산서(총괄), 설계도면(설계개요, 배치도, 평면도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	
	제조시설 및 기계구입	○ 매매계약서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견적서(사양서) ○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	
	<b>공통</b>	○ 공통서류, 업종별 구비서류	
<b>특수 목적 자금</b>	수출기업(무역업)	○ 업종별 구비서류 중 '무역업' 준용	
	창업초기기업	○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3년 이내	
	재해·재난기업	○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(시장·군수)【서식5】	
		○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(사진대장 등)	
	고용우수기업	○ 고용우수기업인증서('일자리대상' 증서(상장), 수상일로부터 2년)	
	산업단지입주기업	○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	
	스마트공장구축(예정)기업	○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	
	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	<b>① 육아재택·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</b> ○ (자금 신청 시 최초 1회)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(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), 대출실행(예정일)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○ (분기별)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(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,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) <b>② 현행법상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</b> ○ (자금 신청 시 최초 1회)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(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(→근로자)와 지원금(→사업주)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	
	<b>※ 시설자금 신청 시</b>	○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준용 ○ (한도우대) 백년·유망 중소기업 인증서, 접경지역 입주확인서 등	